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신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
-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규제샌드박스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특히 이번 개정은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정책을 확정한 즉시 법제처가 6개 법률 개정안 초안 마련부터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정책을 법제화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한 좋은 협업 사례로 평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그 내용·방식·형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청의 경우에는 관계 기관 협의 기간을 종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본위원회가 아닌 별도로 설치된 전문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이로써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종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관계 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규제샌드박스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처장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면서,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협업하여 성과를 낸 이번 개정처럼,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책임자	과 장	손중근	(044-200-6847)
		담당자	사무관	윤중섭	(044-200-6845)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총괄과	책임자	과 장	오정우	(044-200-2435)
		담당자	연구관	이광은	(044-200-24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책임자	과장	조민영	(044-202-6140)
		담당자	사무관	장완익	(044-202-61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책임자	과 장	최준환	(044-202-4740)
		담당자	사무관	정꽃보라	(044-202-4743)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책임자	팀 장	김남혁	(044-203-4520)
		담당자	사무관	김병규	(044-203-4522)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책임자	과 장	윤영중	(044-201-4845)
		담당자	사무관	이용관	(044-201-4842)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석배	(044-204-7190)
		담당자	사무관	김혜남	(044-204-7204)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책임자	팀 장	김보균	(02-2100-2841)
		담당자	사무관	한필윤	(02-2100-2859)

□ 규제샌드박스 개요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 안전성·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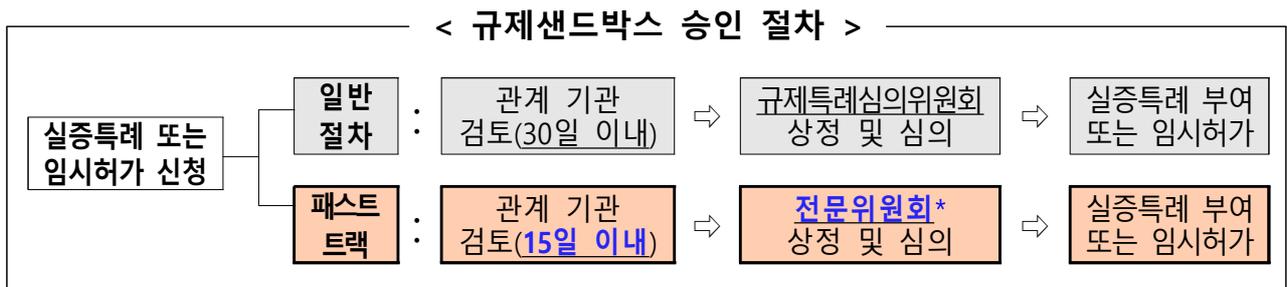
- 실증특례 : 허가 기준·요건이 없거나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 테스트 허용
- 임시허가 : 허가 기준·요건이 없으나 안전성은 입증된 경우 시장 출시

□ 개정 내용

○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

- 유사·동일과제\*의 경우 신속처리절차를 통해 관계 행정기관 검토 회신 기간을 단축하고 심의위가 아닌 전문위 상정·심의 형태로 개편

\*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나 제품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또는 제품의 특례 신청



\* 전문위원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

○ 면책 규정 신설

- 실증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 포상 규정 신설

- 신기술 도입·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법률별 개정 내용

연번	대상 법률	개정 내용	소관부처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유사·동일과제 신속 처리절차 마련 - 면책 규정 신설 - 포상 규정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유사·동일과제 신속 처리절차 마련 - 면책 규정 신설 - 포상 규정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산업융합 촉진법」	- 유사·동일과제 신속 처리절차 마련 - 면책 규정 신설 - 포상 규정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유사·동일과제 신속 처리절차 마련 - 면책 규정 신설 - 포상 규정 신설	국토교통부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면책 규정 신설 - 포상 규정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포상 규정 신설	금융위원회

## 붙임 2 법률 개정안 내용

-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나 제품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회신기간을 종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아닌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함.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 ⑨ (생략)</p> <p>⑩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p> <p>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p> <p>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소관 기</p>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⑦ (생략)

<신설>

관의 조정

3.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조정·처리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

적인 수행·지원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

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

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

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

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

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

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

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 ⑥ (생략)

<신 설>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적극행정 면책 규정 신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포상 규정 신설) 신기술 도입·신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3(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